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회 계 기 본 법 안 검 토 보 고

■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7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11
1. 총괄	11
가. 제정안의 입법배경	11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14
다. 제정안의 주요쟁점	18
2. 조문별 검토	22
가. 총칙	22
나. 회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34
다. 회계정보의 작성 원칙	43
라. 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	51
마. 회계정보의 공시	55
바. 회계감독 업무체계	59
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63
아. 보칙	6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찬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18.
3. 회 부 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

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
· 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
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감사보고
서에 대한 감리,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관계 법령·제
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법인별 주무관
청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
합·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인등의 회계원칙과 회계정보 작성·공시 의무, 독립된 감사
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원칙, 회계감독 업무체
계, 회계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회계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 근
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
적으로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아가 회계정책위원회가 교육·홍보·문화행사 등을 통한 회계 친
화적 사회환경 조성, 회계의 날 지정, 초·중·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단계에 이르는 회계 교육 강화,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회계정책 이행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지원 시책을 종합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 생태계 전반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인등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법인등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으로 정의하고, 그 밖에 회계정보,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감사기준, 감사인, 감사보고서, 공시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법인등으로 규정하되, 법인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인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법인등의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

결사항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 회계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요청할 회계 관련 법령·제도 개선 사항,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바.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계정책위원회가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회계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회계정책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되,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위원장은 회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8조).

자. 회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차. 회계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회계정책관으로 하는 한편,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회계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카.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첫째, 법인등의 회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둘째, 법인등의 활동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법인등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

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타.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등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파.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은 법인등을 관할하는 주무관청(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이 수행하되, 해당 주무관청은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은 회계처리기준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계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 또는 위탁받은 자는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3조).

하.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 간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에 회계처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거. 법인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에 대해

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너. 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16조).

더. 감사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러.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등의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계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법인등과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방식·기한 등은 법인등의 법적 형태, 사업의 규모 및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머.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업무의 운영·절차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감리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버. 회계정책위원회는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의 가치가 제고되는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함(안 제20조).

서.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어. 회계정책위원회가 국민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에 회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회계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회계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2조).

저.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사회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금융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교재개발·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

처.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 관련 제도·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 및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제정, 회계정보 공시방법 수립, 회계감독체계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를 육성하고,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의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24조).

커. 회계정책위원회는 법인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의 확산·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5조).

터. 회계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회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회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퍼.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27조).

허.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

고. 회계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회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노. 회계정책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30조).

도.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부칙).

Ⅲ. 검토의견

1. 총괄

가. 제정안의 입법배경

□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¹⁾에 대하여 회계정보 작성, 회계감사, 공시, 감독(감리)으로 이어지는 회계 절차를 규율하고 있음.

□ 한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 공공기관, 공익법인, 학교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주체, 지방공기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회계제도는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회계정보 작성, 회계감사, 공시 및 감독(감리) 체계 등에 있어 제도 운영의 통일성 및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 구체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별로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용어가 일정하지 않고, 결산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종류 또는 명칭이 일정하지 않으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기관이 상이하고, 외부감사인 에 의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지 않거나 회계주기 또는 회계감사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며, 공시 규제가 없거나 절차·방법이 일정하지 않고, 회계에 대한 감독기관이 상이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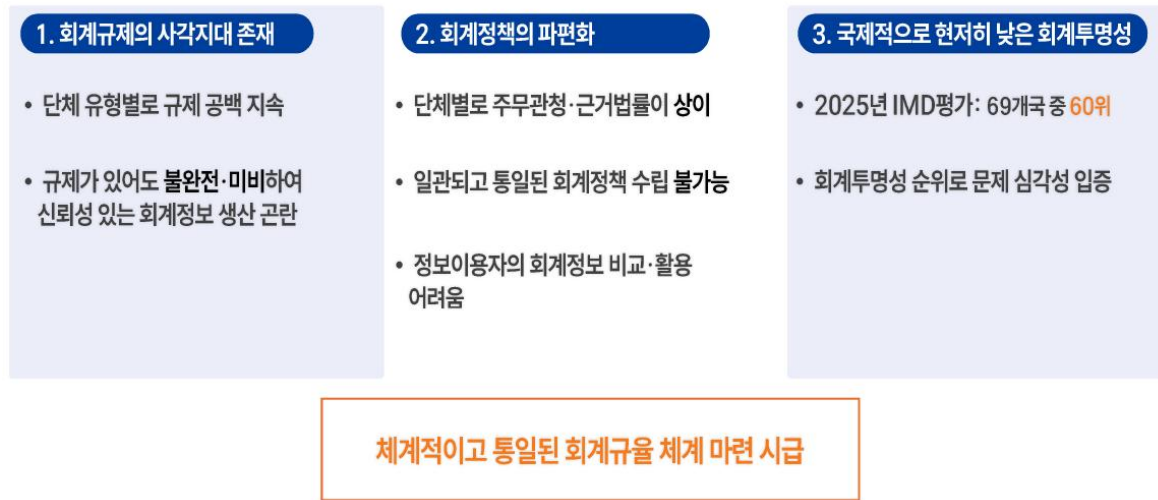
□ 이러한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체계하에서는 ① 회계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법인 또는 단체 유형별로 규제 공백이 지속되거나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② 회계정책이 분산됨에 따라 일관되고 통일된 회계정책 수립이 불가능하여 정보이용자의 회계정보 비교·활용에 한계가 발생하며, ③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저하³⁾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기업뿐 아니라 공익법인, 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여러 유형의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회계 정보가 투자자, 이용자 및 국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안태준·오명진, 「회계기본법 제정 관련 입법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상사법학회, 2025. 12.

3) 2025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opment) 평가: 69개국 중 60위

[그림1]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자료: 박찬대의원실,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 2025. 11.)

□ 이에 제정안은 법인, 공공기관, 공익법인, 학교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주체, 지방공기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규모 점포등관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회계정보의 작성, 회계감사, 공시 및 회계감독 등 회계 절차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다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 8개 장(30개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됨.

[표1] 제정안의 구성체계

장		조	
1	총칙	§1	목적
		§2	정의
		§3	적용대상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	회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5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6	위원회의 권한
		§7	위원회의 구성 등
		§8	위원장 및 부위원장
		§9	실무위원회
		§10	위원회의 사무국 등
3	회계정보의 작성 원칙	§11	회계원칙
		§12	회계정보의 작성
		§13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승인
		§14	회계처리기준의 수정 권고
4	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	§15	회계감사 의무
		§16	감사인의 독립성
		§17	회계감사기준 적용 원칙
5	회계정보의 공시	§18	회계정보의 공시
6	회계감독 업무체계	§19	회계 감리
7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20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1	회계의 날
		§22	회계 교육 강화
		§23	회계 전문인력 양성
		§24	회계 연구기관 등의 육성
8	보칙	§2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원
		§26	권한의 위임·위탁
		§27	민간의 참여
		§28	포상
		§29	지원
		§30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부 칙		§1	시행일
		§2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 제1장(총칙)은 이 법의 입법목적,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제2장(회계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은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회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회계정책위원회는 ① 법인등의 회계정책·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② 회계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시책, ③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하는 시정 권고, ④ 회계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의 권고, ⑤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권고, ⑥ 법인등의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제3장(회계정보의 작성원칙)은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정보의 작성,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승인, 회계처리기준의 수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은 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부과,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회계정보의 공시)은 법인등의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6장(회계감독 업무체계)은 회계정책위원회가 법인등이 작성·공시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7장(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은 회계투명성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마련·추진, 회계의 날 지정, 회계 교육 강화,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8장(보칙)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원, 위원회 권한의 위임·위탁, 민간 참여 확대, 포상,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부칙에서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제정안은 크게 ① 회계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② 법인 등에 대한 회계정보 작성, 회계감사, 공시 및 회계감독으로 이어지는 회계 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의 제시, ③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먼저, 제정안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정책, 회계처리기준, 감리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한 취지

로 보이고,

- 회계 절차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은 개별 법률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회계제도의 일관성·통일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 향후 회계정책·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회계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 권고, 회계 처리기준의 제·개정 등에 대한 승인 및 수정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정책위원회를 통해 그 일관성과 통일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 밖에, 제정안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규제나 감독 외에 교육·연구 및 정책지원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 제정안의 주요쟁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안은 다양한 유형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회계정보 작성,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회계감독 등 회계 절차 전반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회계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회계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이러한 제정안은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계제도에 대하여 일정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회계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기본법 제정을 통한 회계제도 정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분산되어 있는 회계제도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회계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현재 법인 또는 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각 법인등의 설립 목적, 사업의 성격, 공익성 및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에서 규율되어 온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규율체계가 형성된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별 법률에서 회계정보의 작성, 회계감사 및 회계정보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정안이 기존 제도를 직접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계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적 실익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이 법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등의 범위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법인등의 범위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비롯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상법」상 회사와 같은 소규모 회사 등 기존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법인등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제외 대상인 법인등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정안이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 등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부감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수 있는바, 향후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등의 범위 설정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회계정보의 작성, 회계감사 및 회계정보 공시 의무 규정이 선언적 규정인지 실체적 규정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법인등으로 하여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독립적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며,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은 현재 개별 법률등의 근거 법률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정안에서도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관련 규정은 기존 회계제도를 직접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회계정보 작성, 회계감사 및 공시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려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
- 반면, 개별 법률에 이와 같은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일부 법인등에게 제정안의 의무 규정이 직접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회계정책위원회가 이법 위반사항에 대한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법인등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의 관련 규정을 선언적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지 실체적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입법방향에 따라 관련 규정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4) 기본법은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해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칙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나, 정책의 주요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실체적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보고·검사,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등 실체규정에 대한 절차적·보충적 사항을 보칙에 두거나, 의무위

□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각 근거법률에 분산된 다양한 법인등에 대한 일관된 회계·공시의 원칙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 이해관계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 분야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보호 및 법인등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반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⁵⁾는 제정안이 회계제도를 단일화함으로써 특정 자격사(공인회계사)의 독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고,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⁶⁾, 회계정책위원회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는 입법례도 다수 있다. (출처: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928.)

5)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6)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까지 외부감사 등 회계감사 의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

□ 제정안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인등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등

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마.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조직

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건물의 관리조직

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제 정 안

- 거. 기타 다른 법률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한 법인등
2. “회계정보”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경제적 자원의 취득·보유·이용 및 그 변동과 관련된 사실을 회계처리기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측정·분류·요약하여 보고한 정보로서, 재무제표·회계기록·예산·결산·재정현황 보고 등 회계처리의 결과를 포함한다.
 3. “재무제표”란 법인등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 가. 재무상태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회계처리기준”이란 법인등이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작성기준을 말한다.
 5. “회계감사”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인등의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6. “회계감사기준”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행위기준을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법인등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이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9. “공시”란 법인등의 회계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법인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인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법인등의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제 정 안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조는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인등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이 법의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정안 제2조 및 제3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등”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법인등의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회계정보의 작성·감사 및 공시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회계정보,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감사인, 감사보고서 및 공시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이 중 “법인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법인등”에 「상법」

상 회사⁷⁾뿐만 아니라 공공기관⁸⁾, 공익법인⁹⁾, 학교법인¹⁰⁾, 상호금

7)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충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거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용기관¹¹⁾, 각종 관리조직¹²⁾, 지방공기업¹³⁾, 선불식 할부거래업자¹⁴⁾

1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산림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들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1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및 대규모점포등관리자¹⁵⁾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이 각각의 근거법률에 따라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표2] 회계기본법 적용 대상 법인등 현황

구분	근거법령	주무관청	회계처리기준	외부 감사 의무	회계 감사 기준	공시 의무	감리
회사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법	금융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	○	○
회사 (그 외)	상법	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	×	△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	재정경제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	○	○
공익법인등 (의료법인 복지법인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	○	○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	○	×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	○	○
신협 및 중앙회	신용협동 조합법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	○	○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	○	○	×
농협 및 중앙회	농업협동 조합법	농림축산 식품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	○	△	×
수협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 조합법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	○	△	×
산림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산림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산림조합 재무기준	○	○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조직	공동주택 관리법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	○	×
집합건물 관리조직	집합건물법	법무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	○	○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반기업회계기준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법	공정위원회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유통산업 발전법	산업통상부	표준관리규정	○	○	○	×

(자료: 금융위원회)

□ 다음으로, 제정안 제4조에서는 법인등의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회계 관련 규율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회계 분야의 공통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이 법을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은 「상법」상 회사를 “법인등”의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1호가목)하면서 적용배제 대상 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3조)하고 있는데, 현행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적용대상¹⁶⁾이

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아닌 회사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회계감사,
 공시 등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될 수 있는바, ①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 등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부감

-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 바.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사범」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② 이 법 적용대상의 위임입법 방식이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측면에서 적절 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2조제1호타목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¹⁷⁾의 경우에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과 달리 법인격이 없고,¹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운영¹⁹⁾되는 만큼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다음과 같은 경미한 자구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1호다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²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

17)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판교테크노밸리공영개발 등

18)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각 호 생략)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19) 「지방공기업법」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로, 같은 호 카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건물의 관리조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으로 각각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1호차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조직”의 경우 이 법 제5조²¹⁾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조항이고, 이 법에서 ‘관리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²²⁾에 따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21)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들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²³⁾

□ 참고로,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근거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제정안에 이견이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방직 영기업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여러 유형의 법인등에 대한 회계절차를 포괄하여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되, 제외대상 법인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세무사회**는 대규모 영리기업과 달리 비영리·공공부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공익성 확보가 주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상장회사 중심의 외부감사 논리를 모든 법인등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23)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회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제정안 제2장 ‘회계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서는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회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 정 안

제2장 회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회계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등의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하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 등에 대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수정의 권고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법인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8.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9. 그 밖에 법인등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제 정 안

항

제6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각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 등에 대하여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2.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제 정 안

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2.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사무국 등)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회계정책관으로 한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는 법인등의 회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²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회계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법인등의 위법에 대한 시정 및 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4) ①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회계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법인등의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하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 등에 대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⑤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에 관한 사항, ⑥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수정의 권고에 관한 사항, ⑦ 법인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⑧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⑨ 그 밖에 법인등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정안은 회계정책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고, 다양한 법인등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또한, 회계에 관한 직접적인 집행·감독 권한은 소관 주무관청에 그대로 두되, 회계제도의 일관성 확보라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위원회가 법인등의 위법 시정, 회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주무관청에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에 따른 회계정책위원회는 법인등의 회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1조²⁵⁾에 따라 5년 이내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⁶⁾
 - 둘째, 제정안 제6조는 회계정책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6) 다만, 국무총리 소속 정책조정위원회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등은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도 있음.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유사 입법례²⁷⁾를 참고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²⁸⁾

- 셋째, 제정안 제5조제1항제7호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감리업무는 각 법률에서 이미 주무관청이 수행²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회계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방식·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7)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중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8) 금융위원회는 해당 주무관청의 장으로 하여금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개선 여부 및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9) 증권선물위원회(회사), 감사원(공공기관), 재정경제부장관(공공기관), 교육부장관(학교법인)

-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10명의 관계부처 장관과 회계전문가 등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다만, ‘법인등’ 가운데 산림조합 및 중앙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주무관청이 각각 산림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당연직 위원에 산림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추가할 필요³⁰⁾가 있고,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제9조 및 제10조는 회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내용임.

- 회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한편,

회계정책위원회 활동 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

30) 제정안은 위원 총 20명(위원장 국무총리 및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포함) 중 당연직 위원을 12명,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민간위원)을 8명으로 각각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을 추가(12명→15명)할 경우 민간위원 비중이 감소(8명→5명)하게 되므로, 회계정책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회계정책관으로 하려는 것임.

○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 입법례³¹⁾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회계정책위원회는 법인등의 회계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0조³²⁾에서 원칙적으로 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 실무위원

31) 「소비자기본법」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⑦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 또는 사무국 설치에 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위원회 또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³³⁾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정안은 사무국장을 ‘회계정책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직책 명칭은 하위법령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에서 규정³⁴⁾하는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법문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음.

- 먼저,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3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회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제6조)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 필요성을 검토하고, 회계정책위원회의 법령·제도 개선 권고 시 주무관청의 이행계획 제출 의무를 신설하며, 감리업무의 수행은 제외하는 한편,
- 회계정책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제8조)과 관련하여 회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산업통상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산림청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회계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한편, 이해관계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인등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조율하여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반면, **한국세무사회**는 제정안이 회계정책위원회에 회계기준의 승인 및 감리 등의 권한을 집중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민간 중심의 회계 제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 회계정보의 작성 원칙

□ 제정안 제3장 ‘회계정보의 작성원칙’에서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 기준, 회계정보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 정 안

제3장 회계정보의 작성 원칙

제11조(회계원칙) 법인등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법인등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법인등의 회계는 법인등의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법인등의 회계는 법인등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의 회계는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정보의 작성) 법인등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승인) ① 회계처리기준은 법인등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하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주무관청은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은 회계처리기준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 또는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기준의 수정 권고)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회계처

제 정 안

리기준 간의 통일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정안 제11조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한 공정한 처리, 충분한 정보 제공,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회계처리 등을 회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 등의 회계는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법인등에게 적용되는 회계원칙은 각 법인등의 근거법률 또는 회계처리기준에 다양한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음.

- 예를 들면, 대부분의 법인등의 경우 근거법령 또는 회계처리기준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³⁵⁾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단식부기³⁶⁾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법인과 유치원 등은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식부기³⁷⁾에 의할 수 있

35)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37)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단

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3] 법인등의 회계원칙

구분	근거법령	회계처리기준	회계원칙
회사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사 (그 외)	상법	중소기업회계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복식부기·발생주의
공익법인등 (의료법인 복지법인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회계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단식부기·현금주의 (예외: 복식부기)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복식부기 (예외: 단식부기)
신협 및 중앙회	신용협동 조합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복식부기·발생주의
농협 및 중앙회	농업협동 조합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수협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 조합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산림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산림조합 재무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조직	공동주택 관리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집합건물 관리조직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일반기업회계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법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복식부기·발생주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유통산업 발전법	표준관리규정	복식부기·발생주의

(자료: 금융위원회)

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 제정안은 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기본법인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제정안의 회계원칙 중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한 공정한 처리, 충분한 정보 제공의 경우 회계원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한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명시하는 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일반적으로 경제적·재무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거래로 인식하는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입·지출이 일어난 시점에서 거래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에 비하여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실제가치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하여 동시에 기록·관리하는 복식부기는 수입·지출의 결과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에 비하여 수입·지출 내역이 자산·부채의 증감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됨.

[표4] 발생주의·복식부기와 현금주의·단식부기

단식부기	복식부기
○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부채는 별도로 비망 기록 - 산출정보가 부정확, 누락될 가능성 (수입·지출 내역이 자산·부채 증감과 미연계)	○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와 연계 기록 - 자산·부채 변동을 동시에 기록 - 대차일치원리에 따라 거래누락 시 자동 파악 (수입·지출 내역이 자산·부채 증감과 연계)
현금주의	발생주의
○ 현금출납 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있어야 기록 - 취득 당시 가치로 기록 후 금액 불변 (예 :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하락시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가치 왜곡)	○ 거래발생 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없더라도 거래 발생시 기록 - 실제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예 :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하락시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하여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부문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국가회계기준」 제정·공포”, 2009. 3.)

- 다만,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을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단식부기로 운영 중인 일부 법인등의 경우에도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주의 및 단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가 허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의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소규모 법인등의 회계처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법인등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하 “회계처리기준 제·개정기관”)이 회계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기

준을 제·개정하도록 하되, 해당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인등의 성격 및 소관 법령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등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두어 해당 법인등의 사업규모, 공익성 등을 고려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정책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또한, 제정안은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반영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재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은 각 법인등의 성격 및 소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을 중심으로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제정안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대하여 회계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회계정책위원회에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정책위원회와 기존 회계기준 제·개정기관 간의 권한 배분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⁸⁾

3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해당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 제12조는 법인등으로 하여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 정보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인등이 회계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법인등의 회계정보 작성 의무는 현재 각 법인등의 근거 법령 또는 회계처리기준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제정안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법인등의 회계정보 작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려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개별 근거 법령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계정보 작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해되더라도 일부 법인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을 선언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등에 직접 적용되는 실체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실체적 규정으로 볼 경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나 각 근거 법령의 관련 규

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등이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서도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반면, **한국세무사회**는 모든 법인등에게 복식부기 원칙을 의무화할 경우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한 법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회계처리기준의 무리한 통합은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라. 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

- 제정안 제4장 ‘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의무의 부과,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 정 안

제4장 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

제15조(회계감사 의무) 법인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은 회계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적 주의의무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감사기준 적용 원칙) 감사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법인등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독립적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외부감사법」의 회계감사기준³⁹⁾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

- 이는 법인등의 유형 및 설립 근거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일정한 기본원칙 아래 정비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사 품질의 최소 기준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표5] 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및 회계감사기준 현황

구분	근거법령	회계감사 의무화 여부	회계감사기준
회사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법	○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회사 (그 외)	상법	×	<해당없음>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	공공감사기준 (감사원규칙)
공익법인등 (의료법인, 복지법인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신협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	(미규정)
농협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	(미규정)
수협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	(미규정)
산림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	(미규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조직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집합건물 관리조직	집합건물법	○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	(미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법	○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 법인등이 독립적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은 현재 각각의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근거 법령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나 벌칙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회계감사 의무 조항은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개별 근거 법령에서 회계감사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등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법인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에 대하여는 회계감사 의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법인등의 규모·업종·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제정안은 회계감사 의무 적용 배제 대상 법인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임입법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독립성⁴⁰⁾과 전문가적 주의의무⁴¹⁾는 회계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가치인 만큼 대원칙으로 명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다만, 회계감사 의무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법인등에 직접 적용되는 실체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각 근거 법령의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 의무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이해관계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정안 적용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 법인 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원칙을 제시하되, 다수의 법률에서 규모,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계감사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에 예외대상을 위임하고 있는 제정안은 타당하다는 입장임.
- 반면, **한국세무사회**는 모든 법인등에게 외부감사 수준의 회계 체계를 강제할 경우 영세한 비상장법인 등에게 불필요한 감사 비용

40) 감사 의견에 편견 발생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회피

41) 감사인이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한 채 감사를 계획·수행함과 동시에, 감사 전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함을 의미함.

등의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제정안이 감사인을 회계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정 직역(공인회계사)의 업무 독점을 초래할 우려⁴²⁾가 있다는 입장임.

마. 회계정보 공시

- 제정안 제5장 ‘회계정보의 공시’는 법인등의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 정 안

제5장 회계정보의 공시

- 제18조(회계정보의 공시) ①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등의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② 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자가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법인등 및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 방식 및 기한 등은 법인등의 법적 형태, 사업의 규모 및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법인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42) 소상공인연합회는 세무사가 제정안의 ‘감사인’에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의 선택권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인등의 유형별로 공시의무의 존재 여부 및 공시 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보완하여 회계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6] 법인등에 대한 회계정보 등 공시 여부

구분	근거법령	회계정보 공시 여부
회사(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법	○
회사(그 외)	상법	△ (비치, 열람)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
공익법인등 (의료법인, 복지법인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
신협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
농협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 (비치, 열람)
수협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 (비치, 열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 (비치, 열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조직	공동주택법	○
집합건물 관리조직	집합건물법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법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

(자료: 금융위원회)

□ 앞에서 검토한 회계정보 작성 의무, 회계감사 의무와 마찬가지로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 역시 현재 각 법인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이미 규율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정안에서도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려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보임.

□ 제정안에 대하여 회계감사 의무와 유사하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회계정보 공시 의무 조항은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회계정보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등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일부 법인등에 대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법인등의 법적 형태, 사업 규모 및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법인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제정안은 회계정보 공시 의무 적용 대상 법인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의 법적 형태, 사업 규모 및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감사 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위임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적용 대상 법인등의 범위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임입법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이 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며, 이해관계자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외에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⁴³⁾
 - 다만, 회계정보 공시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법인등에 직접 적용되는 실체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또는 각 근거 법령의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농협조합, 수협조합 등 일부 법인등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의 비교가능성, 적시성도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 반면, **한국비철금속협회**는 비철금속의 제련·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재무정보의 공시만으로 기업의 원자재 보유량 등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영상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43) 금융감독원도 감사보고서를 공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산업공급망이 외국의 수출통제정책에 취약해지는 등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의무의 범위와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바. 회계감독 업무체계

- 제정안 제6장 ‘회계감독 업무체계’는 법인등이 작성·공시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 정 안

제6장 회계감독 업무체계

- 제19조(회계 감리) ① 위원회는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운영·절차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19조는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하여 감

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인등의 회계정보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처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7] 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및 감리 여부

구분	근거법령	회계감사	감리 여부	감리기관 (위탁기관)
회사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법	○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사 (그 외)	상법	×	×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	○	감사원
공익법인등 (의료법인, 복지법인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재정경제부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	○	교육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등)
신협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	×	
농협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	×	
수협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	×	
산림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조직	공동주택관리법	○	×	
집합건물 관리조직	집합건물법	○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법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	×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감리업무 위탁 규정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또는 사학진흥재단 등에 감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⁴⁴⁾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 제도상 법인등의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는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감독기관이 수행하고 있는바, 제

4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정안에 따른 회계정책위원회의 감리권한이 기존 감독체계와 중복
될 가능성 및 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둘째, 제정안 제19조는 회계정책위원회가 “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
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18조는 공시
대상을 “회계정보”로 한정하고 있어 공시의 대상과 감리의 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회계정책위원회의 성격, 기능 및 현재 법인등에 대
한 감리 수행 현황을 고려할 때, 회계정책위원회의 직접 감리업무
수행 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이 조항을 반영할 경우 감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회계정책위원회의 자료제출·의견진술·보고 요구 권한,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장부·서류열람, 업무·재산상태 조사 허용 및 방해·거부·
기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완하고, 법인등과 감사인이 각각 재무
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회계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⁴⁵⁾

45) 금융감독원은 회계정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 감리 수단, 자료제출 방해·거부·기피에
대한 대응수단을 보완하고, 법인등 및 감사인에 대한 실효적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재 많은 법인등의 회계정보에 대한 감리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제정안 제7장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은 회계투명성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회계의 날 지정, 회계 교육 강화, 회계 전문 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 정 안

제7장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제20조(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의 가치가 제고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회계 교육 강화) ① 위원회는 국민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계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회계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장임.

제 정 안

④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 전문인력 양성) ① 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회계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위원회는 회계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회계정보 공시방법 수립, 회계감독체계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정안은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회계의 날 지정, 회계교육 강화, 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 관련 연구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회계투명성이 단순히 규제나 감독을 통해서만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21조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현행 「외부감사법」 제38조의2⁴⁶⁾에서도 회계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 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두어 「외부감사법」 제38조의2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위원회로 하여금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정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회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는 ① 대학에 고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⁴⁷⁾, 「교육기본법」 제5조⁴⁸⁾, 「고등교육법」 제21조⁴⁹⁾ 등의

4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7)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48)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9) 「고등교육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특정 분야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②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또는 학원의 교습과정은 원칙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6조⁵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⁵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에서 특정 교과를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하도록 정하는 것은 관계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위원회로 하여금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23조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를 선발·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조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반영하는 경우에는 주체를 “위원회”에서 “정부”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회계 연구기관 등의 육성 및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5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24조는 현재에도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회계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 내에 회계정책연구원 등이 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 외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을 투입하여 별도의 연구기관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에 동의하나, 회계교육 강화(안 제22조), 회계전문인력 양성(안 제23조), 조세 감면 등의 지원(안 제29조)의 주체를 “회계정책위원회”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 보칙

- 제정안 제8장 ‘보칙’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원, 위원회 권한의 위임·위탁, 민간 참여 확대, 포상,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 정 안

제8장 보칙

제25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법인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확산·정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회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제 정 안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민간의 참여) 위원회는 회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 ① 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관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지원)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회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정안은 법인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고, 회계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정책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감독 중심의 접근뿐 아니라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함께 마련하는 한편,

○ 감리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회계정책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⁵²⁾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25조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제정안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의 구체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법」에서 그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원 규정을 이 법이 아닌 「외부감사법」에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또는 관리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회계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29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의 입법례⁵³⁾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 회계투명성 제고는 일반적으로 회계기준 정비나 회계감독 강화 등 제도적·규제적 수단을 통하여 달성되는 정책목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특정한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지원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조세 지원 규정을 반영하더라도, 조세의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통상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로 완화하고, 지원 주체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에 대하여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

5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